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접 경 지 역 지 원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일부 개정(2021.4.21. 시행)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이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연직 위원, 간사 및 위촉직위원 위촉권자를 변경하고,
- 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의견(위원회 구성시 특정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성별 고려)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재산가치 평가시 감정평가법인만이 평가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법인과 감정평가사 무소까지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을 반영하려는 것임
- 다. 또한, 본 개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희(2020.11.26.~12.11.)시 제출된 중소벤처기업부 의견(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여 필요)을 반영함.

3. 주요내용

- 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 간사, 위촉직위원 위촉권자 변경 명시 및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위원 추가(안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항)
- 나. 위촉직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토록 명시(안 제8조 제1항 제3호)
- 다.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 위원 추가(안 제8조

의2 제1항 제1호)

라. 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 주체 확대(안 제1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3호 중 “중”을 “중 성별을 고려하여”로 “국무총리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중 “국무조정실”을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7조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8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u>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u>	1. <u>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환경, 그 밖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2명의 범위에	3. ----- ----- ----- ---- <u>중 성별을 고려하여</u> ----

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② ~ ④ (생략)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제8조의2(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
3항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
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의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
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
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
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생략)

② ~ ④ (생략)

제17조(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이-----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8조의2(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
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

-----중소벤처기업
부,-----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평가

기준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 비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제4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평가 기준과 보상 원칙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illegible]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연 락 처	(044) 205 - 3511